

대구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317964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317964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199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1. B

2. C

변론 종결2022. 4. 20.

판결 선고2022. 5. 18.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1994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각 철거하고, 공동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제1심 및 당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20행, 제5면 1행, 제5면 7행의 각 "이 사건 토지"를 "분할 후 D 토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남현

판사장래아

판사김지영

별지